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0월 8일 한기천의원 등 22명

나. 회부일자 : 2010년 10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10. 18)
상정 및 보류
- 제16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12. 20)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재정위원회 한기천 의원)

□ 제안이유

-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무분별한 녹지훼손 등으로 자연과 생활환경이 급속히 황폐화되고 있음.
-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있는 낙원으로 만드는 일,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시민의 의무임. 이제 우리 생활주변의 모든 공해요인으로부터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유지하는데 시민 모두가 앞장서야 함.
- 이러한 자연보호운동을 이끌어 갈 시민조직을 지원·육성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므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에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

으로 보전·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자연보호운동 조직 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3조)
- 나. 보조금의 신청, 실적보고, 보험가입,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내지 제7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p><제165회 임시회(2010. 10. 18)> ○ 새마을운동단체 지원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자연환경보전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는 법률안 제정 후 심사숙고해서 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p>	<p><제165회 임시회(2010. 10. 18)> ○ 각 지역별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23개동 1천여명의 자연보호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 도모에 제도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기 바람.</p>
<p><제166회 정례회(2010. 12. 20)> ○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정회 후 토론 실시 ○ 본 건과 관련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제정 준비 중으로 경기도의 안건 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지원·육성을 통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p>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제16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2010. 10 .18) : 보류(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 심의)
- 제1656 부천시의회 정례회(2010. 12 .20)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 부천시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 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
4. 자연보호운동 사업 우수 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조직 및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

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